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9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2
2. 난임치료 휴직의 근속기간 포함	6
[참고자료]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현황(2021~2025년)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21.
3. 회 부 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부모의 돌봄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

Ⅲ. 검토의견

1.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휴직) ①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만 <u>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 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 하게 된 경우 7의2. ~ 12. (생 략)	7. --- <u>12세</u> ----- <u>6학년</u> ----- ----- ----- ----- 7의2. ~ 12.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은 임신·출산을 위한 휴직 제도가 「교육공무원법」에 반영된 이후 “1세 미만(1994년)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2008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2011년)”로 확대되어 왔음.

[표 1] 교육공무원법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개정 내역

구분	최초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내용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세 미만인 자녀 양육 또는 여교원의 임신·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또는 여자 교원 등의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여자 교원 등의 임신·출산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3458호, 제44조제1항제7호 1981.11.23. 개정 1982. 1. 4. 시행	법률 제4841호, 제44조제1항제7호 1994.12.31. 개정 공포일 시행	법률 제8528호, 제44조제1항제7호 2007.7.19. 개정 2008.1. 1. 시행	법률 제10634호, 제44조제1항제7호 2011.5.19. 개정 공포일 시행

자료: 「교육공무원법」 해당 조항 연혁 정리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도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 및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제7호)」에서 각각 동일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첫째, 「교육공무원법」에 현행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기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반영한 이후 무려 15년이 경과하였고, 이후 합계 출산율¹⁾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표 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현황(2011년~2023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출산율(명)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자료 : 국가통계포털(최종 검색일 2026.2.9.)

둘째,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부모의 돌봄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돌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²⁾

셋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민간근로자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입법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직역과 교육공무원 처우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음.

1)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2025년)

2)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2025. 9. 18.

[표 3]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관련 법률안 계류 현황

구분	법률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소관 상임위원회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04	김선교의원	2024.6.21	교육위원회
2		2200971	한정애의원	2024.6.26.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68	한정애의원	2024.6.26.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47	한정애의원	2024.6.11.	행정안전위원회
5		2200818	김선교의원	2024.6.21.	
6		2203191	엄태영의원	2024.8.26	
7		2213949	위성곤의원	2025.11.6	
8		2212860	최기상의원	2025.9.10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45	한정애의원	2024.6.11.	
10		2200817	김선교의원	2024.6.21.	
11		2203194	엄태영의원	2024.8.26	
12		2212861	최기상의원	2025.9.10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208348	서영석의원	2025.2.21.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각 법률안 내용 정리(최종 검색일 2026.2.10.)

※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 외에, 정부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예고(2025.11.25. ~ 2025.12.22.)한 바 있음.

□ 한편, 교육부는 동일한 내용의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2025. 12. 5. ~ 2026. 1. 14.)한 바 있으며, 개정안을 통하여 육아친화적 공직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민간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육아 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직역간 또는 공공과 민간 영역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입법 시기 및 적용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2. 난임치료 휴직의 근속기간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의 장기간 치료를 위하여 휴직(이하 “불임·난임 휴직”이라 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육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없이 불임·난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u>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u> 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44조(휴직) ④ ----- ----- <u>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u> ----- ----- ----- -----.

나. 검토의견

- 교육공무원에 대한 불임·난임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운영하고 있음.³⁾

[표 4] 최근 5년 간 교육공무원 불임·난임 휴직 현황(2021 ~ 2025년)

(단위: 명)

육아휴직자		유	초	중	고	특수	계
2021년	교육공무원 총원*	15,754	180,147	80,299	70,226	5,227	351,653
	불임난임휴직자 연인원 (총원 대비 비율)	40 (0.25%)	447 (0.25%)	150 (0.19%)	162 (0.23%)	18 (0.34%)	817 (0.23%)
2022년	교육공무원 총원	16,361	181,907	80,247	68,930	5,514	352,959
	불임난임휴직자 연인원 (총원 대비 비율)	63 (0.39%)	567 (0.31%)	238 (0.30%)	199 (0.29%)	23 (0.42%)	1,090 (0.31%)
2023년	교육공무원 총원	16,462	180,511	79,510	68,148	5,603	350,234
	불임난임휴직자 연인원 (총원 대비 비율)	78 (0.47%)	545 (0.3%)	223 (0.28%)	254 (0.37%)	20 (0.36%)	1,120 (0.32%)
2024년	교육공무원 총원	16,448	179,240	78,157	67,101	5,683	346,629
	불임난임휴직자 연인원 (총원 대비 비율)	115 (0.7%)	851 (0.47%)	303 (0.39%)	255 (0.38%)	27 (0.48%)	1,551 (0.45%)
2025년	교육공무원 총원	16,487	178,176	78,555	66,126	5,746	345,090
	불임난임휴직자 연인원 (총원 대비 비율)	145 (0.88%)	1,007 (0.57%)	338 (0.43%)	280 (0.42%)	46 (0.8%)	1,816 (0.53%)

* KEDI 교육통계 기준(최종 검색일 2026.2.10.)

※ 조사기준일 : 휴직시작일이 전년도 4월 2일 ~ 해당연도 4월 1일인 교원

3)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2022. 10. 18.>

1. ~7. (생략)

7의2. (생략)

7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4., 2016. 1. 27., 2018. 3. 20., 2019. 8. 20., 2021. 3. 23., 2022. 10. 18.>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 11. (생략)

② · ③ (생략)

□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임·난임 휴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별도의 규정없이 질병휴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소요 최저연수⁴⁾ 또는 연가일수 산정⁵⁾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에 불임·난임을 위한 휴직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속기간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⁶⁾

4)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11. 18., 2023. 12. 26.>

1. · 2.(생략)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질병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 3. (생략)

③ ~ ⑮ (생략)

5)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 31., 2018. 7. 2., 2018. 9. 18.>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생략)

6)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 13. (생략)

② (생략)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7)에서 연간 총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 4일 무급)의 난임휴가만 규정하여 근속기간에 반영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은 장기휴직에 관한 규정은 없음.

[표 5] 불임·난임 휴직 관련 법령 현황

법률명	관련 조문	주요내용 (기간)	근속기간 반영 등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별도 조문 없이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에 포함하여 운영 (기간 관련 별도 규정 없음)	반영하지 않음	난임휴직 분리·신설(청원휴직)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중 (정부안 입법예고, 2025.11.25.~12.22.)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별도 조문 없이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에 포함하여 운영 (기간 관련 별도 규정 없음)	반영하지 않음	난임휴직 분리·신설(청원휴직)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중 (정부안 입법예고, 2025.11.25.~12.22.)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에 불임·난임 휴직이 포함됨을 명시	반영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3	<u>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만 규정, 휴직에 관한 규정은 없음</u>	난임치료 휴가(6일 이내)만 근속기간 반영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 정리(최종 검색일 2026.2.10.)

- 7)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0. 22.>
-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2.>
- [본조신설 2017. 11. 28.]

□ 불임·난임 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에 관하여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불임·난임을 위한 장기치료는 질병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소요 최저연수 또는 연가일수 산정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앞서 [표 5]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불임·난임 휴직을 질병휴직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해당 휴직을 종전의 질병휴직과 달리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연가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또는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교육공무원 불임·난임 휴직의 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개정안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현황(2021~2025년)

(명)

육아휴직자		유	초	중	고	특수	계	전년대비 증감(%)
2021년	교육공무원 총원*	15,754	180,147	80,299	70,226	5,227	351,653	-
	육아휴직자 연인원 (총원 대비 비율)	767 (4.87%)	8,487 (4.71%)	3,871 (4.82%)	3,322 (4.73%)	351 (6.72%)	16,798 (4.78%)	-
2022년	교육공무원 총원	16,361	181,907	80,247	68,930	5,514	352,959	0.37
	육아휴직자 연인원 (총원 대비 비율)	841 (5.14%)	8,542 (4.70%)	3,891 (4.85%)	3,329 (4.83%)	368 (6.67%)	16,971 (4.81%)	1.03
2023년	교육공무원 총원	16,462	180,511	79,510	68,148	5,603	350,234	-0.77
	육아휴직자 연인원 (총원 대비 비율)	882 (5.36%)	7,684 (4.26%)	3,570 (4.49%)	3,015 (4.42%)	339 (6.05%)	15,490 (4.42%)	-8.73
2024년	교육공무원 총원	16,448	179,240	78,157	67,101	5,683	346,629	-1.03
	육아휴직자 연인원 (총원 대비 비율)	974 (5.92%)	7,878 (4.40%)	3,654 (4.68%)	2,966 (4.42%)	359 (6.32%)	15,831 (4.57%)	2.20
2025년	교육공무원 총원	16,487	178,176	78,555	66,126	5,746	345,090	-0.44
	육아휴직자 연인원 (총원 대비 비율)	1,123 (6.81%)	7,510 (4.21%)	3,594 (4.58%)	2,917 (4.41%)	345 (6.00%)	15,489 (4.49%)	-2.16

* KEDI 교육통계 기준(최종 검색일 2026.2.10.)

※ 조사기준일 : 휴직시작일이 전년도 4월 2일 ~ 해당연도 4월 1일인 교원